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연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356

발의연월일: 2024. 8. 29.

발 의 자:이연희·김동아·윤준병

김한규 • 김준혁 • 이강일

김남근 • 정일영 • 홍기원

서영교 · 임미애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한 대학을 시작으로 텔레그램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 영상물을 생성·유포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전국 각지에서 대규모로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음.

현행법은 사람의 얼굴·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 또는 가공한 내용을 "편집물등"으로 규정하고 편집·합성 또는 가공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.

그런데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하여 "편집물등"을 제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지·구입·저장 또는 시청한 자가 급증하고 있고, 관련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.

이에 "편집물등"을 소지 · 구입 · 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규

정을 신설하고,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하며, 촬영물 또는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·강요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(안 제14조의2제1항, 제4항, 제5항 및 제14조의3).

법률 제 호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의2제1항 중 "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"을 "사람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 한다.

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·구입·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14조의3의 제목 중 "촬영물"을 "촬영물과 편집물"로 하고, 같은 조제1항 중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)"을 "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), 편집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)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의2(허위영상물 등의 반포	제14조의2(허위영상물 등의 반포
등) ① <u>반포등을 할 목적으로</u>	등) ① <u>사람</u>
<u>사람</u> 의 얼굴·신체 또는 음성	
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・영상	
물 또는 음성물(이하 이 조에	
서 "영상물등"이라 한다)을 영	
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	
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	
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	
합성 또는 가공(이하 이 조에	
서 "편집등"이라 한다)한 자는	
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	
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
	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・구입
	•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2년
	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
	하의 벌금에 처한다.
<u>④</u> 상습으로 제1항부터 <u>제3항</u>	<u>⑤</u> <u>제4항</u>
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	
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	
가중한다.	
제14조의3(<u>촬영물</u> 등을 이용한	제14조의3(<u>촬영물과 편집물</u> 등을

협박·강요)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)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②·③ (생 략)

이용한 협박・강요) ①
촬영물 또는 복제물
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),
편집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
복제물을 포함한다)
②·③ (현행과 같음)